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9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김승수·강선영·박성민

권성동 • 조승환 • 서지영

박준태 · 조배숙 · 이인선

구자근 · 강대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.

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 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(4촌 이내의 혈족·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)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	제21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(4촌
	이내의 혈족・인척과 동거하는
	친족을 말한다)관계일 때에는
	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된다.